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16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2,233,620원, 지방교육세 2,984,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30,9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0

가. 원고는 2013. 2. 7.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외 [redacted]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축물(전체 연면적 5,909.3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증축)하여 취득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2,375.08㎡, 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 따른 100분의 50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1,600,000원, 지방교육세 13,805,720원, 농어촌특별세 17,257,150원 합계 272,663,070원을 2013. 3. 18. 피고에게 신고하고 2013. 3. 1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1] 재단법인 [redacted]재단(이하 "[redacted]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의 일부(면적 2,042.5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분 5,909.36분의 5,576.82를 무상출연(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7.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redacted]재단에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 따라 기 감면받은 취득세 52,233,620원, 지방교육세 2,984,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30,970원 합계 58,949,36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후, 2014. 2. 7. 피고에게 쟁점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이고, 위 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 합계 58,949,3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1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증여일자를 2013. 12. 20.로 기재하였으나, 재산출연증서(갑 제1호증)의 작성일자는 2013. 11. 26.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미소들재단간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미소들재단의 설립시점인 2013. 12. 31.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redacted]재단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나, 위 증여에는 원고가 다시 쟁점부동산을 [redacted]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다시 임차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원고가 그 취득 이래로 계속하여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2]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3. 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원고 주장의 제178조 제2호는 위 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0

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0조 제2호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3. 2. 7.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2. 31. 위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redacted]재단에 증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법 제94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취지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기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데 있고, 쟁점부동산은 원고가 그 취득 이래로 계속하여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redacted]재단간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redacted]재단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redacted]재단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94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0

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각·증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로 해석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단 '매각·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취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제94조 제2호의 문언상 위 규정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소유자가 적어도 2년간 소유권 변동 없이 해당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위 제20조 제2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 사례(세정과-1124,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90호)를 원용하고 있는데, 위 사례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제94조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소유권 변동 또는 용도 변경만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는 또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0

우에 이는 해당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위 제94조 제2호에 의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